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36

발의연월일: 2021. 2. 4.

발 의 자:최연숙·권은희·김정재

이태규 • 권영세 • 김석기

고영인 • 조오섭 • 조수진

서정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,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,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5 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 교육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 ① (생	제7조(아이돌보미의 자격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	②
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
	교육
<u>5</u> . (생 략)	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